

#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

의안 번호	37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7. 15.

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,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절차 : 기관·단체 추천 ⇒ 공적심의 ⇒ 의회동의 ⇒ 수여

나. 수여시기 : 수시

다. 수여자 예우

- ▶ 시 주관 각종행사 초청
- ▶ 애경사시 축조전 및 화환 전달 등

라. 그간 수여인사 : 36명(광역시 이전 8명, 이후 28명)

마. 금회 수여대상자(1명) : 前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성권 이사장

### 3. 수여대상자 현황 및 공로개요

<b>공 로 조 서</b>			
주 소	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2동 주공아파트 325-207		
소속 및 직위	前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	재 직 기 간	2007.1.1 ~ 2008.6.10
성 명	이 성 권(李聖權)	생 년 월 일	1952. 4.28
<p>○ 철도관련 사업추진 양해각서 체결('07. 5. 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부고속철도 도심통과구간 철도변정비사업 및 노반공사 추진 행정지원 협조</li> <li>- 지역업체 참여방안 강구 등 협력</li> <li>- 대전역사 증축 및 사업추진 현안 발생시 적극 협력</li> <li>-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 3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적극 동참</li> </ul> <p>○ 대전광역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 업무협력관 파견('07. 7. 2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부고속철도(대전도심구간)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관 상호 파견(시-시설5급, 공단-토목분야 부장급) 업무 협력체계 구축</li> </ul> <p>○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수탁 협약체결('07. 12. 1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수탁공사 협약체결,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</li> <li>- 입체교차시설 17개소 등 3개 분야 19건 대전광역시 위탁(약 1,800억원)</li> </ul> <p>○ '지역의무공동도급제'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(2008. 5. 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전본사를 비롯한 전국 74억미만 공사 30%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</li> </ul>			
주 요 경 력			
년 월	이 력	년 월	이 력
1980년	제23회 행정고등고시	2005.9~2006.12	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장
2004~2005	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	2007.1~2008.6	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
<p>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8년 7월 11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 천 자 : 대전광역시장</p>			

## 관계법령

### ○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

**제2조(명예시민증 수여)** ①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(이하 “명예시민증”이라 한다)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회기중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대전광역시장이 수여하고 사후 대전광역시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

### ○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사무 처리규정

**제2 조(수여대상범위)** ①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(이하 “명예시민증”이라 한다)의 수여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에 협력한 자
2. 대전광역시를 방문하는 외국인, 해외교포, 타 시·도 출신인사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자
3. 대전광역시의 문화·예술·체육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대전광역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
4. 과학·기술·경제분야에 이바지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
5. 타 지역으로 진출 또는 퇴임한 기관단체장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자
6. 그 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4 조(선정절차)** ② 「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」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설명하고, 사후 의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# 긴급의안 제출 사유서

## □ 의 안 명

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

## □ 긴급 제출사유

-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일 14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집회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,
- 수여대상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성권 이사장이 2008년 6월 10일자로 퇴임하였으나 재임기간중 대전을 위해 공헌한 공적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안전 제출시한(집회일 14일 전 까지)내 제출하지 못하였음.
-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성권 이사장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그 간의 노고를 위로·격려하고자,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제175회 시의회(정례회)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8. 7.

대전광역시



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귀하